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문화재재단]

2020. 2.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4
2. 감사대상기관	4
3. 감사중점	4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4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자체 예비규정 개선 필요(개선)	6
2. 장학금 제도 운영 미흡(통보)	11
3.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추진 미흡(기관주의)	13
4. 공사 계약 및 집행 등 업무 부적정[기관주의·시정(환수)]	16
5. 안전 및 보건관리 소홀(통보)	20
6.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 업무 미흡(기관주의)	23

7. 전도금 제도 운용 불합리(개선)	27
8. 궁중문화축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기관주의)	30
9.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 관리 미흡(통보)	35
10.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사업 관련 물품 관리 미흡(통보)	37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문화재단은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되었고,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6. 5. 16.부터 5. 27.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현황,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 현황,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 11. 18.부터 11. 29.까지 10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 11. 29. 한국문화재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별첨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자체 여비규정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가. 국외여비 적용 기준 불합리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여비규정」 제7조(국외여비)에 따르면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3의 국외여비 기준표에 의하도록 지급하고 있어 [표 1]과 같이 지급하고 있다.

[표 1] 한국문화재단 여비규정 <별표 3> 국외여비 기준표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이 사 장	제1호 다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 별표4 참고
상 임 이 사	제1호 라	"
부서장, 팀장, 팀원	제2호 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하고자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에는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 방안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단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 권고안을 토대로 자체 여비규정을 개정·정비하여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권익위원회 권고안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중 3급 이하의 직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의 2호 나목(6급 이하)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재단의 「여비 규정」에는 1~2급,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부서장, 팀장, 팀원 모두 2호 가목을 적용하므로 인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국외여비 중 일비는 평균 \$4, 숙박비는 평균 \$13.75, 식비는 평균 \$9.5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많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여비 지급 구분표 대비 한국문화재단 여비 지급 기준표

공무원 구분 (해당공무원)	1호 나목 (차관)	1호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호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호 가목 (3~5급)	2호 나목 (6급 이하)	비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여비 지급 구분표 (권익위 권고안)	기관장	감사	이사	1~2급	3급 이하	※ 규모가 작은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아래 등급 적용
한국문화재단 여비지급 기준	-	이사장	상임이사	부서장, 팀장, 팀원	-	

나. 친지숙박 경비 지급 기준 부적정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2019.1.25)을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 상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는 출장자에게 직급에 구분 없이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재단은 「여비규정」 <별표1>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친·인척집 및 공동숙박으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임원은 40,000원, 부서장·팀장·팀원은 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다. 국외출장 장기체재 시 일비 적용 기준 불합리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에 따르면 국외출장의 경우에도 국내 근무지의 출장과 같이 장기체재 시 [표 3]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표 3]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감액 비율

구 분	초과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 ~ 30일째(15일)	10분의 1
31 ~ 60일째(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재단 「여비규정」 제20조의2(상시출장의 여비 및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에 따르면 장기체재 시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감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별표 8] 직접경비 산출방법_2.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에 따르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ODA사업 수행 등을 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붙임 1]과 같이 국외출장 중 동일지역에 16일 이상 장기체재한 건은 총 10건(출장자 40명)이며 일비를 감액한 경우는 21회, 감액하지 않는 경우는 19회이고, 특히 ‘2017년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ODA)’과 ‘2019 상반기 미얀마 바간 벽화 보존처리’건의 경우에는 출장자 중 감액과 미감액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이라 보기가 어렵고, ▲ 한국문화재단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기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국제교류팀 내 출장자에 따라 일비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외출장시의 일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규정(국내·외 여비기준)을 개정하고,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문화재단 「여비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붙임 1] 국외출장 중 동일지역 16일 이상 장기체재 중 일비 감액 내역(2016~2019)

년도	사업명	출장자	출장일수	출장지	장기체재 감액여부
2016	2016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 (ODA)	국제교류팀 ○○○	94박 96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94박 96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86박 88일	라오스	미감액
		한국전통문화대 ◇◇◇	86박 88일	라오스	미감액
		한국전통문화대 ◆◆◆	86박 88일	라오스	미감액
2017	2017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ODA)	국제교류팀 □□□	44박 46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86박 88일	라오스	감액
	2017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ODA)	국제교류팀 ◎◎◎	86박 88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51박 53일	라오스	감액
		한국전통문화대 ◇◇◇	72박 74일	라오스	감액
		한국전통문화대 ■■■	72박 74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59박 61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55박 57일	라오스	미감액		
2018	2018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ODA)	국제교류팀 ◎◎◎	79박 81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72박 74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79박 81일	라오스	미감액
	2018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ODA)	국제교류팀 ○○○	81박 83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101박 103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101박 103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74박 76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74박 76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74박 76일	라오스	미감액
국제교류팀 □□□	66박 68일	라오스	미감액		
2019	2019년 상반기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복원정비 공사	국제교류팀 ◎◎◎	100박 102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100박 102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100박 102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91박 93일	라오스	감액
	2019 상반기 미얀마 바간 벽화 보존처리	국제교류팀 <<<	53박 55일	미얀마	미감액
		국제교류팀 ◀◀◀	39박 41일	미얀마	미감액
		국제교류팀 ▷▷▷	25박 27일	미얀마	감액
	라오스 석조문화재 보존복원 기능공 양성 현지연수	국제교류팀 □□□	22박 24일	라오스	감액
	2019 중반기 라오스 홍낭시다 해체조사	국제교류팀 ◎◎◎	24박 26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39박 41일	라오스	감액
	2019 하반기 라오스 홍낭시다 해체조사	국제교류팀 ◎◎◎	24박 26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39박 41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84박 86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96박 98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49박 51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98박 100일	라오스	감액	
국제교류팀 ▶▶▶		84박 86일	라오스	감액	
합 계			40명(감액: 21회, 미감액: 19회)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장학금 제도 운영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전 및 전승을 장려하고자 장학금 운영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매년 장학금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수와 장학금액을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장학금 조성(‘92년) 이후 2015년까지 [표 4]와 같이 98명에게 총 119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4] 장학금 지급 현황(‘92~’15)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금액(단위: 원)	비 고
기타(한국의집 단원 외)	9명	11,000,000	
서도소리보존회	17명	19,000,0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명	19,000,0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탁	40명(8회)	40,000,000	
문화재발굴조사	15명	30,000,000	
계	98명	119,000,000	

재단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전통문화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한 차례의 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9.10월 현재, 재단의 장학금 재원은 장학원금 100백만 원과 이자수익 39백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당초 도입한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장학금 재원 조성 추가 검토 등 장학금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장학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장학금
재원 기반으로 장학금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운영제도에 적합하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제 목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추진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표 5]와 같이 문화재청과 민간위탁 약정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민간위탁 약정 체결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 원)	담당자	비고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19.1~12월	600	●●●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8%) 반영

특히 2019년에는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¹⁾ 중 5개 종목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이하 '전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 6]과 같다.

[표 6] 2019년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 계획(9개 과제)		추진실적('19.11월 현재)		향후 계획	
	내용	예산	내용	예산	내용	예산
아리랑	기획공연 운영 및 활성화 (10~11월)	80			기획공연 운영 및 활성화(12월) -장소: 한국의집 민속극장 -참가인원: 300명 -내용: 아리랑 활용 기획공연	50
	아리랑 해외기획공연 지원 (8~9월)	30			아리랑 해외기획공연 지원(11월) -장소: 사할린(러시아) -참가인원: 35명 -내용: 사할린 아리랑제 지원	20
	해외교류행사(7월)	100			해외교류행사 코리아리랑(12월) -장소: 라오스 -참가인원: 300명 -내용: 인류무형유산 합동 공연	44

1)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을 9개 지정하여 종목 전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9개 종목: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구분	사업 계획(9개 과제)		추진실적('19.11월 현재)		향후 계획	
	내용	예산	내용	예산	내용	예산
			아리랑 전승자 워크숍 운영 (10.28~29) -장소: 문경 STX 리조트 -참가인원: 150명	20		
			경북공 특별공연 아리랑 고(11.1) -장소: 경북공 흥례문 -참가인원: 150명 -관람객: 약 500명 -내용: 지역 아리랑 기획공연	85		
제다	찾잔 속 인문학, 제다(5월)	10	찾잔 속 인문학, 제다(5월)	20		
	전통 산사 연계 제다 체험(5월)	20	전통 산사 연계 제다 체험(5월)	9		
			고궁다담(10월 / 3회) -장소: 창덕궁 낙선재, 창경궁 통명전 -참가인원: 150명	15		
씨름	씨름한마당축제(5월)	70	씨름한마당축제(5월)	83		
해녀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4~7월)	60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9~12월)	40		
	해녀어머님의 부엌(6월, 9~11월)	50	해녀어머님의 부엌(9~12월)	60		
장담그기	장담그기 체험(10~11월)	30	장담그기 체험(9~11월)	28		
운영비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150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107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19
합 계		600		467		133

하지만 2019년 전승지원 사업과정을 살펴본 결과 ▲ 전승지원 사업 민간위탁 약정서 제7조에 따르면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변경 요청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구두로만 협의 진행하여 행정 절차를 미 준수하였고, ▲ 사업계획 수립('19.3월) 자체가 너무 늦어져 당초 9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아리랑과 제다 종목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3개 과제(기울임체)의 신설 추가로 인해 [표 7]과 같이 당초 사업에서 예산액이 감액 조정되어 공연회수 및 대상국가 축소 등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표 7] 사업비 감액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액	변경 내용
아리랑 기획공연 운영 및 활성화	80,000	50,000	△30,000	공연 횟수 조정(4회→2회)
아리랑 해외교류행사	100,000	44,000	△56,000	행사대상 국가 조정(2개→1개)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60,000	40,000	△20,000	사업 대상자 조정(3개→2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문화재단은 향후 연초에 수립한 계획의 변경을 지양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민간위탁 약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당초 계획에 없던 3개 과제 추진을 위해 타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의 취소, 변경에 따라 예산 집행 효율성을 위해 신규 3개 과제를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사업내용,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된 사업 취소, 변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재단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민간위탁 약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약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재 청

기관주의·시정(환수)

제 목 공사 계약 및 집행 등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가.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비 지출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의 회계관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 절차를 정함으로써 제반 회계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재단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하여 정확 명료한 보고를 제공하며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2005.10.24.)하였다.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처리는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회계연도)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규정 제3조(회계연도)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한국의집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시공’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 이월 등의 절차 없이 사업비를 다음해에 지출하였다.

[표 8] 회계연도 초과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 원)	공사업체	사업비 지급일	비고
한국의집 환경개선공사 (건축, 기계) 시공	2016.12.15. ~ 2016.12.30.	300,150,000	(주)◆◆건설	2017.01.26.	선금 지급
한국의집 환경개선공사 (전기) 시공	2016.12.15. ~ 2016.12.30.	77,237,600	■□■□공업(주)	2017.01.23.	
한국의집 환경개선공사 공사감리 용역	2016.12.14. ~ 2016.12.31.	8,600,000	(주)○○○○○○	2017.01.26.	
인천공항 제2터미널 문화체험공간 조성(건축)	2017.10.18. ~ 2017.12.31. ²⁾	180,337,330	(주)○○○건설	2018.02.12.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 원)	공사업체	사업비 지급일	비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문화체험공간 조성(전기)	2017.10.18. ~ 2017.12.31. ³⁾	109,394,000	(주)삼기전	2018.02.07.	
인천공항 제2터미널 문화체험공간 조성(전기소방)	2017.10.18. ~ 2017.12.16.	9,990,000	(주)삼기전	2018.02.12.	
인천공항 제2터미널 문화체험공간 조성(감리)	2017.11.15. ~ 2018.01.17.	7,000,000	(주)건축사사무소 [인] [인]	2018.02.12.	

나. 공사 완료 후 정산시 설계변경 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3항의 기준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나 ‘인천공항 한국전통 문화센터(탑승동관) 환경개선공사 시공’ 등 2개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18~20일이 경과된 후 정산 시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표 9] 공사 완료 후 정산 시 설계변경 실시 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업체	설계변경(정산)일	비고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탑승동관) 환경개선공사 시공	2016.11.25. ~ 2017.02.28.	368,410,000	[인] [인]건설(주)	2017.03.20.	
한국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 (건축, 기계)시공	2017.01.24. ~ 2017.02.27.	305,602,320	(주)삼기전	2017.03.17.	

2) 2017.12.15. 공사기간 15일 연장 및 공사금액 27,095,3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당초 공사기간: 2017.10.18. ~ 12.16. / 변경 공사기간: 2017.12.18. ~ 2017.12.31.)

3) 2017.12.15. 공사기간 15일 연장 및 공사금액 1,653,2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당초 공사기간: 2017.10.18. ~ 12.16. / 변경 공사기간: 2017.12.18. ~ 2017.12.31.)

다. 제출 서류 미비 및 정산 미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1항의 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항의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한국의집 민속극장 객석조명 및 조명실 분전반 교체’ 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확인서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2018년 5월 (주)○○○ ○○○○○와 계약 체결한 ‘2018년 경북궁 별빛야행 집경당 내부 전각 인테리어 공사’ 건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확인 없이 준공처리 하였으므로

미 정산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390,43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 처리 시 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 ①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규정 준수, 설계변경 규정 준수, 제출서류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기관주의)**
- ② ‘2018년 경북궁 별빛야행 집경당 내부 전각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미 정산된 보험료 390,43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환수)]**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안전 및 보건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내 용

가. 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필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등)제1항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7년 6월 ‘산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단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4’을 구축하였다.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항에 따라 재단은 2015년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인 (사)○○○○○○협회를 통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제1항, 법 제17조(산업보건의) 및 매뉴얼 제2절(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따라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다.

[표 10] 안전·보건 조직

구분	성명(기관명)	직위 및 자격	선임일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이사장	2019. 7. 21. ~ 현재	
관리감독자	□□□	경영지원실장	2019. 7. 21. ~ 현재	
	□□□	문화유산활용실장	2019. 7. 21. ~ 현재	
	❖❖❖	문화재조사연구단장	2019. 7. 21. ~ 현재	
	▲▲▲	문화예술실장	2019. 7. 21. ~ 현재	
	◆◆◆	문화상품실장	2019. 7. 21. ~ 현재	

4) 한국문화재재단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용역(2017.3.22. ~ 6.30. / (사)○○○○○○협회 / 31,449천 원)을 통하여 매뉴얼 구축 완료

구분	성명(기관명)	직위 및 자격	선임일	비고
안전관리자	(사)○○○○○○○협회	안전관리전문기관	2015. 1. 1. ~ 현재	
보건관리자	-	-	-	
산업보건의	-	-	-	

※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음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매뉴얼 제3절(안전·보건 교육)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구분		의무교육시간	연도	대상인원(시간)	교육실적	참여율(%)	비고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017	10(144)	9(128)	89	
			2018	16(240)	10(152)	63	
			2019	18(288)	18(288)	100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017	0	0	0	
			2018	326(978)	241(723)	74	
			2019	286(858)	278(834)	97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2017	0	0	0	
			2018	391(2346)	242(1452)	62	
			2019	757(4542)	721(4326)	95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8시간 이상	2017	0	0	0	
			2018	0	0	0	
			2019	0	0	0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법 및 재단 매뉴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안전관리 현황 미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합공시)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안전관리 현황(안전관리 책임자)을 공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향후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운영, 신규채용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 현황을 공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안전관리 현황을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 업무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6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4항제3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다.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문화재조사연구단은 ‘포항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발굴조사 보고서 제작’ 건을 발주하며 업무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로 지역 제한을 두어 발주하도록 계약부서에 요청하였고, 계약부서는 대구광역시로 지역 제한 계약을 진행하여, 대구광역시를 소재지로 둔 업체가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되었다.

재단은 문화재조사연구단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상북도로 제한함이 타당하였으나 소재지와 관계없는 대구광역시로 제한하여 입찰공고 하였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

재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경우 재단 「회계

규정」과 「한국문화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재단은 2016.5월부터 2019.10월까지 총 152건(19,156,073천 원)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계약 업무 처리에 미흡하였다.

1)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실명 기재

「업무처리 기준」 제7조(평가의 실시) 제4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에게 배부되는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단 국제교류팀은 ‘파야톤주사원 지반조사 연구’ 건의 제안서 평가(2019.3.27.)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3개)의 실명을 기재한 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안서 평가 시 실명을 기재한 후 평가를 실시한 내역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제안서평가 시 업체 실명 기재 내역

부 서	계 약 명	평가일자	업체수
국제교류팀	파야톤주사원 지반조사 연구	‘19.3.27.	3
공예진흥팀	2018년 메종 오브제 종합운영대행	‘17.12.22.	2
문화콘텐츠팀	2018 문화유산채널 동영상콘텐츠(UHD 한국의 문화유산) 외주용역	‘18.4.13	5
문화콘텐츠팀	2018 문화유산채널 동영상콘텐츠(문화유산 뉴스) 외주용역	‘18.3.13	2
문화교육팀	2018년 문화유산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용역	‘18.4.10	5

2) 제안서 평가 시 입찰공고서와 다르게 평가

재단 문화콘텐츠팀은 ‘2018 문화유산채널 동영상콘텐츠(UHD 한국의 문화유산) 외주용역’ 건의 제안서 평가(2018.4.13.)시 입찰 공고의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표 13]과 같이 실제 평가 시 입찰공고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별 배점을 다르게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3] 평가항목별 배점을 당초 입찰공고서와 다르게 평가한 내역

평가항목	배점	
	입찰공고서	실제평가
제안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추진 전략(기획, 인력 투입 계획 등)	15	-
프로그램 기획안 및 제작 계획 - 기획 의도에 맞는 독창적인 기획안 - 전문인력투입 등 제작 계획	-	20
콘텐츠 제작 능력 - 기획안, 구성안(기획력, 구성력, 연출 등) - 스토리텔링, 촬영 장비 활용, 후반작업 등	25	30
콘텐츠 품질 관리 - 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제작 수행능력 - 품질 관리(사전, 사후)를 위한 구체적 방안	20	-
제안 내용의 충실도 - 기획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제작 수행능력	-	10
합 계	60	60

3) 정량평가의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차이 과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항과 제8항에 따르면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정량적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없고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교류팀은 ‘파야톤주사원 지반조사 연구’ 건의 제안서 평가(2019.3.27.)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3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정량평가 항목(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점)에 대한 최고 점수(10점)와 최저 점수(6점)의 차이가 배점한도(10점)의 40%로 30%를 초과하였다.

또한 활용기획팀은 ‘2019년 제5회 궁중문화축전 운영대행사 선정(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건의 제안서 평가(2019.2.18.) 시 정량평가 항목으로 ① 사업장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점), ② 근무인력보유현황(3점), ③ 유사분야 사업실적(5점) 등 3가지 항목에 총 10점을 부여하였으나 ②와 ③에 대한 평가점수를 최고 3점에서 최저 1점으로 정하여 최고 점수(3점)과 최저 점수(1점)의 차이가 배점한도(3점)의 66%로 30%를 초과하였다.

4) 정량평가 미흡

제안서 평가 중 실적 등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이며, 실적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면 평가 기준에 따라 동일 업체에 대하여는 각각의 평가위원들이 동일 점수를 부여함이 타당하나 재단 홍보팀은 ‘2018년 월간문화재 발간 업체 선정’ 건의 제안서 평가(2018.1.4.)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6개)의 수행실적을 정량으로 평가하였으나, A위원의 경우 5개 업체의 수행실적을 다른 위원(10점)들과 다르게 부여(8~9점)하였다.

다. 검사 후 대금 지급 지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제1항과 재단 「회계규정」 제73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단의 경우 개별 계약 건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사업 부서에 검사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재단은 검사완료 및 대금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6월~2019.10월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 대금이 지급된 39건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 대금 미청구 등으로 약 87%(34건)가 검사완료 및 대금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6일 이후(최대 146일) 지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 처리 시 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전도금 제도 운용 불합리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및 지원, 출토 유물보존처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조사연구단(이하 ‘조사연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연구단은 사업비 중 일부를 재단 자체 규정인 「예산회계규정」 제50조(전도금)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전도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도금 집행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017~2019년 10월까지 문화재조사연구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구단 전체 예산액	전도금 집행액			비고
		전도금 신청액	집행액	잔액(반납액)	
2017년	13,743	3,952	3,911	41	
2018년	13,535	7,620	7,309	311	
2019.10월까지	15,092	6,907	6,857	50	
계	42,370	18,479	18,077	402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지급금의 지출)에 따르면 지급금은 채권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 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에 따르면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50조(전도금)에 따르면 전도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4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서 지출할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 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본사의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의 내부통제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여 가능한 한 지급금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거나 조사연구단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두어 회계업무를 위임, 직접 운영토록 하여 전도금의 집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단은 「예산회계규정」 제50조제2항에 ▲ 공과금 및 세금, ▲ 일용직 및 회의비 등 인건비 형식의 지급액, ▲ 문화재조사연구단 사용 자금, ▲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비로 재무담당 또는 분임관, 대리인이 승인한 경비는 500만 원이 초과하여도 전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조사연구단 사용 자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전도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표 15] 2017~2019년 10월말까지 문화재조사연구단 전도금 금액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전도금 집행액								비고
	500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6,887	1,869	138	1,231	27	810	-	-	
2018년	6,643	1,593	180	1,758	68	2,891	7	1,067	
2019.10월말	6,419	1,550	106	978	60	2,611	13	1,718	
계	19,949	5,012	424	3,967	155	6,312	20	2,785	

이로 인하여 [표 15]와 같이 최근 3년간 문화재조사연구단의 전도금 금액별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3년간 총 18,077백만 원의 전도금이 집행되었으며, 건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전도금 집행 건수는 428건 4,017백만 원이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150건 6,312백만 원, 1억 원 이상은 20건, 2,784백만 원이 전도금으로 집행하는 등 전도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금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한 일상경비의 성격이 아닌 소규모발굴지원의 대행사업비가 2017년 322백만 원, 2018년 4,047백만 원, 2019년 10월말 4,289백만 원이 전도금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연구단의 전도금 집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예산회계규정」 제36조(회계업무의 대리 및 분임)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단의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두어 회계업무를 위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회계규정 및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자체 회계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도금 집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제 목 궁중문화축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가. 운행대행사 선정 시기 개선 필요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9년 궁중문화축전(2019.4.27.~5.5. / 이하 ‘축전’이라 한다)을 시행하며 아래 그림과 운행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재단은 2019년 제5회 궁중문화축전 운행대행사 운영계획(안)을 수립(‘19.1.24)하며 축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3개 권역(경복궁, 창덕궁 등, 덕수궁 등)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운행대행사를 각각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1,768,567천 원(경복궁 1,003,893천 원, 창덕궁 등 390,168천 원, 덕수궁 374,506천 원)이다.

재단은 상기 운행대행 용역의 과업으로 ▲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포함한 10개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연출, ▲ 축전 콘셉트를 적용한 하드웨어(무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설치 및 운영, ▲ 현장 인력 운영·관리 계획 수립, ▲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운영대행사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면, ▲ 사업예산이 각각 2억 원 이상이고, ▲ 행사운영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용역이므로 입찰공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여 제안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후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이 타당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이와 같이 40일 이상의 입찰공고 기간을 가질 경우 행사 시작이 1개월도 채 남아있지 않은 4월초 경(입찰공고 후 계약까지 60일 정도가 소요됨)에나 계약이 이루어짐 등을 사유로 총 15일 동안만 입찰 공고하였고, 각각의 입찰에 2~4개(경복궁 4개, 창덕궁 등 3개, 덕수궁 등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또한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계약은 축전 개막 40일 전인 2019.3.18. 체결되었고 착수보고는 축전 개막 30일 전인 2019.3.28. 이루어져, 과업지시서를 통해 축전 개막 30일 전까지 수립하도록 한 ‘종합운영매뉴얼 및 안전 계획’ 등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한 ‘종합운영계획’이 계약 후 10일 만에 작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30일 동안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및 각종 행사 관련 물품 제작, 인력의 모집 등이 이루어져 행사의 사전 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단은 이후 축전의 진행 시 충분히 검토된 제안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입찰 공고 시작일을 보다 앞당긴 후 충분한 입찰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계약시작 시점 또한 보다 앞당겨 행사의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축전 관련 일부 용역 발주 시기 등 미흡

재단은 축전과 관련하여 행사대행 외에 오픈스튜디오 운영, 궁중문화축전 만족도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표 16]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16] 2019년 궁중문화축전(4.27~5.5.) 관련 행사대행 외 주요 용역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 요청일	계약일	계약기간	감독자 지정일	
2019년 제5회 궁중 문화축전	만족도 경제성 효과 분석	수의계약	19,910,000	★★★★★★ 주식회사	4.25	4.25	4.25~6.30	5.2
	주요 프로그램 음악 제작	수의계약	20,000,000	★★★★	4.25	4.25	4.25~5.5	5.2
	★★★★ 야간공연	수의계약	98,000,00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 보존회	4.25	4.25	4.25~5.3	4.29
	종합안내소 운영	수의계약	22,000,000	주식회사 ***프로모션	4.25	4.25	4.25~5.5	5.2
	해가리개 구조물 설치	수의계약	22,000,000	*****이벤트	4.25	4.25	4.25~5.5	5.2
	오픈스튜디오	위탁	33,000,000	#####재단	4.25	4.25	4.26~5.5	-

계약을 통해 축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때는 재단 사업부서는 적절한 시기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그 계약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적정 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축전이 2019.4.26(금) 저녁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 활용기획팀이 상기 6건의 용역들을 행사 1일전(2019.4.25.) 회계팀에 요청한 점, ▲ 회계팀 또한 6건의 계약 모두를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과 상기 계약의 감독자 지정을 과업기간 중 실시(2019.5.2.)한 점 등 해당 용역의 발주 및 계약의 진행이 적절하였다 볼 수 없다.

특히 ‘종합안내소 운영’, ‘만족도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은 발주자인 재단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축전 행사 시작 전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협의를 가질 시간이 없는 행사 전일에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고, 주요 프로그램 음악 제작의 경우는 계약 전 사전에 과업을 수행⁵⁾하게 한 후 추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의 발주 등이 미흡하게 처리되었다.

5) 주요 프로그램 음악 제작 건의 사전 과업 수행은 담당자가 시인한 사항임

다. 운영대행사 용역 완료 검사 부적정

재단 「회계규정」 제25조(예산집행절차)제3항에 따라 사업부서는 청구서 및 관련 회계증빙서등을 예산통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제1항과 재단 「회계규정」 제73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축전 운영대행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후 정산하도록 하였고, 계약완료(19.6.30) 후 계약업체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였으면, ▲ 정산 서류 등이 적정하면 검사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 정산 서류 등이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을 요청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활용기획팀은 계약완료일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19.6.30)하며 제출된 정산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였음에도 검수조서 작성 시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후 활용기획팀은 지체상금 등의 부과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2019.8.8. 일부금액(기 지급된 선금을 제외한 계약금액 90%)을 지급하도록 회계부서에 요청하였고, 2019.9.9. 활용기획팀은 계약기간 이후 지출(7.12~8.30)된 706,604천 원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하여 사후 정산이 완료되었다 인정한 후 계약금액의 잔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회계부서에 요청하여 2019.9.11 최종 계약대금이 지급되는 등 용역의 검사 및 정산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문화재단은 2020년부터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운영대행사 등 용역 선정 및 협상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용역 검사 부적정과 관련, 운영대행사가 용역에 대한 계약 이행을 완료

하였고, 검사조서는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사를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용역완료 검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금 지급 유보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을 준용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사후원가 검토관계 증빙자료를 받고,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유보한 것으로 정산서류가 부적정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정산→검사→용역비 지급 순으로 진행토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 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정하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 기간 완료 당시에는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부족한 사항이므로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재단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대금 지급 유보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임을 표시하고 대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내용과 그 해제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대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지급 유보 등이 진행되었으므로 재단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궁중문화축전과 관련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련직원 교육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희망 직원들에 한하여 중식 비용을 급여에서 일정금액(1인당 월 70,000원)을 공제하여 세입 조치하고, 사업외 비용 예산을 반영하여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2005.10.24.)을 하면서 제22조(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제2항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전에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는 이 규정에 의한 기본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중식비의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식당 운영 등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직원들로부터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공제금액보다 많게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중식비를 추가로 공제 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7] 2016~2019.10월말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지원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0월말	비고
공제수입액(A)	161,961	170,012	218,589	178,106	
집행액 (B)	155,924	158,011	214,870	182,261	
차액(A-B)	6,037	12,001	3,719	△ 4,155	

[표 17]과 같이 재단에서 2016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원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 현황이 공제수입액보다 적게 지출 되어 문제가 없어 보이나, 2019년의 경우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공제 수입액보다 4,155천 원 초과 지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재단은 연내에 2개월간 추가 지출이 예상되므로 추가공제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향후 직원식당 운영 및 직원 식대 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향후 재원(직원 대상 공제금액 기반) 범위 내로 직원식당 운영 예정이며, 공제금액 초과 예산 집행분 발생 시 직원대상 추가 공제 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직원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사업 관련 물품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국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산보존관리 지원 분야에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무소 현장용 물품으로 구입한 현황은 [표 18]과 같이 총 72개, 451백만 원이다.

[표 18]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사업 물품 구입 현황(50만 원 이상)

(단위: 개, 천 원)

구 분	합계		라오스		미얀마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입현황	72	451,666	36	221,317	36	230,349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의 국제교류팀에서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재단은 「예산회계규정」 제58조(재물조사)에 따라 매년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은 향후 사업 완료시에 해당 국가에 기증하는 물품이라는 사유로 재물조사 항목에서 누락하였고, 현재까지 별도의 정기 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산회계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나, 국제교류팀에서는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고,

해당 지역 담당자별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물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재단은 해외사업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품은 단시간에 구입·기증 절차를 밟아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제 교류팀 자체의 통합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증물품의 구입당시부터 물품대장 등록,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기증 시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